# 공시 지도 한 장

One Map of Corporate Disclosure

무엇을, 누구에게, 언제까지 — 네 칸의 대표 조문

- ✕ 공시는 다 금융위원회에 낸다
- ✓ 서류마다 **받는 곳이 다르다**

## 오늘의 좌표

시장 구분: 양쪽 · 근거 계열: 자본시장법 / 거래소 규정

- **정기공시** — 사업보고서
- **발행공시** — 증권신고서
- **지분공시** — 대량보유·임원 소유상황
- **수시·공정공시** — 거래소 공시규정

네 칸은 법의 목차와 **1:1이 아니다**
오늘은 칸마다 대표 조문 하나씩

## 발행 — 신고서가 먼저

자본시장법 §119① (괄호 생략) · 법률 제21647호, 시행 2026.11.13

>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(…)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**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** 이를 할 수 없다.

## 정기 — 사업보고서

자본시장법 §159① 본문 일부(앞·단서 생략) · 법률 제21647호, 시행 2026.11.13

> …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**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** 제출하여야 한다. …

## 지분 ① — 5% 보고

자본시장법 §147① 일부 · 법률 제21647호, 시행 2026.11.13

> … 대량보유(…)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 이내에 … **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** 보고하여야 하며, …

## 지분 ② — 임원·주요주주

자본시장법 §173① 일부(후문 생략) · 법률 제21647호, 시행 2026.11.13

>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… 각각 **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** 보고하여야 한다. …

## 지분공시는 두 곳에 있다

자본시장법 편·장 표제 · §147①·§173①·§173조의3① · 법률 제21647호, 시행 2026.11.13

| 조문 | 법 안의 위치 | 받는 곳 |
|---|---|---|
| §147 | 제3편 제2장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|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|
| §173 | **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**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|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 |
| §173조의3 | 같은 제4편 제1장 |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 |

### 하기 전에 내는 보고

자본시장법 §173조의3① 일부 · 법률 제21647호, 시행 2026.11.13

> … 그 거래기간의 **개시일 전**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. …

### 일이 생기기 전 / 생긴 뒤

자본시장법 §119① · §173조의3①

- **하기 전에** — 증권신고서(§119①) · 임원 등 거래계획 보고(§173조의3①)
- **생긴 뒤에** — 사업보고서 · 5% 보고 · 임원 소유상황 · 수시공시

### 주요사항보고서는 어디로

자본시장법 §161① 일부 · ⑤ · 법률 제21647호, 시행 2026.11.13

> …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(이하 "주요사항보고서"라 한다)를 **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**. …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.

### 수시·공정은 왜 거래소 규정인가

자본시장법 §391① · 법률 제21647호, 시행 2026.11.13

> ① 거래소는 주권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상장한 법인(이하 이 조 및 제392조에서 "주권등상장법인"이라 한다)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 · 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등상장법인 공시규정(이하 "공시규정"이라 한다)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 · 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**별도의 공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**.

### 시장마다 조문번호가 다르다

유가 공시규정 제2481호 · 코스닥 공시규정 제2480호(둘 다 시행 2026.8.3)

| | 유가증권시장 | 코스닥시장 |
|---|---|---|
| 수시공시 | 제7조① 「사유 발생일 당일에」 | 제6조① 「사유발생일 **당일까지**」 |
| 공정공시 | 제15조① | 제12조① |
| 자율공시 | 제28조 | 제26조① |
| 정기보고서 거래소 제출 | 제21조① | 제19조① |

### 유가 — 수시공시 원칙

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① 일부(단서 생략) · 유가 공시규정 제2481호, 시행 2026.8.3

> … 내용을 그 **사유 발생일 당일에**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…

### 코스닥 — 수시공시 원칙

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① 일부(단서 생략) · 코스닥 공시규정 제2480호, 시행 2026.8.3

> …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[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**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**. …]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…

### 공정공시 — 선별 제공하면 신고

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① 본문(각 호 생략) · 유가 공시규정 제2481호, 시행 2026.8.3 · 코스닥은 제12조①

>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이하 "공정공시대상정보"라 한다)을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**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**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 …

## 자율공시 — 할 수 있다

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8조 · 유가 공시규정 제2481호, 시행 2026.8.3 · 코스닥은 제26조①

>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7조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외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**신고할 수 있다**. 이 경우 그 신고는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.

## 핵심 포인트 · 슬라이드 18

유가 제28조 · 코스닥 제26조①

- ✕ 자율공시는 의무도, 기한도 없다
- ✓ 의무는 아니지만, **하기로 하면 다음 날까지**

## 정기공시는 양쪽에서 말한다

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1조① · 유가 공시규정 제2481호, 시행 2026.8.3 · 코스닥은 제19조①

>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**법 제159조**, 제160조 및 제16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등을 법정기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공시 지도 한 장

자본시장법 법률 제21647호, 시행 2026.11.13 · 유가·코스닥 공시규정 시행 2026.8.3

| 축 | 대표 조문 | 받는 곳 | 언제 |
|---|---|---|---|
| 발행 | 법 §119① | 금융위원회 | 수리 전엔 모집·매출 못 함 |
| 정기 | 법 §159① |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|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|
| 지분 | 법 §147① · §173① |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/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 | 5일 이내(산입하지 않는 날 있음) |
| 수시·공정 | 유가 제7조·제15조 / 코스닥 제6조·제12조 | 거래소 | 수시 원칙은 당일 |

## 핵심 포인트 · 슬라이드 21

자본시장법 §161①⑤

주요사항보고서는 금융위원회로, 거래소엔 **금융위원회가 송부**

실제 서류는 어떻게 생겼나 — 3회차

## 회사 안에서 볼 질문

자본시장법 §173① 등

- 일정표가 서류별로 받는 곳을 따로 적는가
- 하기 전에 내는 보고를 마감일로 관리하는가
- 임원·주요주주 보고의 주어는 개인(§173①)
- 시장별 조문번호를 따로 관리하는가

## 이번 편에서 뺀 것

5일에서 빼는 날 · 거래계획 보고의 구체 기간 · 공정공시 신고 기한

시행령·규정을 읽은 뒤에

공시는 축마다 근거도, 받는 곳도, 기한도 다르다

다음: DART냐 KIND냐

## 핵심 용어 영문 대응표 (Key Terms)

| 한국어 용어 | English Term |
|---|---|
|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|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|
| 금융위원회 |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(FSC) |
| 증권선물위원회 |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(SFC) |
| 거래소 | the Exchange (Korea Exchange) |
|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| KOSPI Market Disclosure Regulation |
|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| KOSDAQ Market Disclosure Regulation |
| 정기공시 | periodic disclosure |
| 발행공시 | issuance disclosure |
| 지분공시 | ownership disclosure |
| 수시공시 | timely disclosure |
| 공정공시 | fair disclosure |
| 자율공시 | voluntary disclosure |
| 증권신고서 | registration statement |
| 모집·매출 | public offering (offering and sale) |
| 수리 | acceptance (of a filing) |
| 사업보고서 | business report (annual report) |
| 대량보유 보고(5% 보고) | report on large shareholding (5% rule) |
| 임원·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| report on holdings of specified securities by officers and major shareholders |
| 거래계획 보고 | trading plan report |
| 주요사항보고서 | report on major issues |
| 송부 | forward / transmit |
| 공시규정 | disclosure regulation |
| 사유발생일 | date on which the reason arose |
| 세칙 | enforcement rules (detailed rules) |
| 내부자 거래 | insider trading |
| 불공정거래의 규제 |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|

## 근거 법령 · 기준서 출처

- **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** 제119조 제1항 (법률 제21647호, 시행 2026.11.13)
- **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** 제159조 제1항 (법률 제21647호, 시행 2026.11.13)
- **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** 제147조 제1항 / 제3편 제2장 제2절 표제 (법률 제21647호, 시행 2026.11.13)
- **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** 제173조 제1항 / 제4편 제1장 표제 (법률 제21647호, 시행 2026.11.13)
- **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** 제173조의3 제1항 (법률 제21647호, 시행 2026.11.13)
- **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** 제161조 제1항·제5항 (법률 제21647호, 시행 2026.11.13)
- **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** 제391조 제1항 (법률 제21647호, 시행 2026.11.13)
- **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** 제7조 제1항·제15조 제1항·제21조 제1항·제28조 (규정 제2481호(2026.7.31 개정), 시행 2026.8.3)
- **코스닥시장 공시규정** 제6조 제1항·제12조 제1항·제19조 제1항·제26조 제1항 (규정 제2480호(2026.7.31 개정), 시행 2026.8.3)

공부하며 남기는 일반 학습 자료이며 투자 권유나 법률·세무·회계 자문이 아닙니다.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업무에는 반드시 현행 원문을 확인하세요. · A brand of UIEL Co., Ltd. · AI-generated narration.